

서울특별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3001
----------	------------

제안년월일 : 2025년 9월 8일
제안자 : 보건복지위원장

1. 수정이유

- 개정안에서는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사업의 법적근거를 상위법과 달리 '임의규정'으로 정하고 있으며,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지급대상을 조례에 정하고 있어 이를 수정하고자 함.

2. 수정의 주요 내용

-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수정함. (안 제4조).
-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지급대상을 정하고 있는 조문을 삭제함. (안 제5조제3항 삭제)

서울특별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할 수 있다”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한다.

안 제5조제3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제안)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u>서울특별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u></p>	<p><u>서울특별시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u></p>	<p>(개정안과 같음)</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내에서 출생한 <u>요보호아동</u>이 입양 후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u>보호</u> <u>대상아동</u>----- ----- ----- ----- ----- ----- ----- -----.</p>	<p>(개정안과 같음)</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u>다음 각 호와 같다.</u></p>	<p>제2조(정의) ----- ----- ----- <u>다음과</u> ----- -----.</p>	<p>(개정안과 같음)</p>
<p>1. “아동”이란 <u>18세 미만인 사람</u>을 말한다.</p>	<p>1. ----- 「아동 복지법」 제3조제1 <u>호에 따른 아동</u>----- -----.</p>	<p>(개정안과 같음)</p>

2. “입양아동”이란 「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

3. “장애아동”이란 「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되는 입양아동을 말한다.

4. “요보호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을 말한다.

5. “입양가정”이란 요보호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말한다.

6. “입양기관”이란 법 제20조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이하 “시

2. “입양아동”이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

<삭 제>

3. “보호대상아동”이란 -----.

4. ----- 보호대상아동---.

<삭 제>

제3조(시장의 책무) ① -----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장”이라 한다)은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신 설>

<신 설>

--- 영구적인 가정을

--. 이 경우 영구적인 가정을 제공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유사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입양아동과 입양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 및 차별 해소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입양과 관련한 기관 또는 개인이 입양으로 인하여 부당한 재정적 이익 등을 취득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건전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p><u>한 입양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u></p>	
<p>제4조(<u>입양가정 지원사업</u>) 시장은 건전한 입양문화의 조성 과 입양아동의 <u>권익</u>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p>	<p>제4조(<u>지원사업</u>) ----- ----- ----- <u>권익</u> 및 ----- ----- --- <u>할 수 있다.</u></p>	<p>제4조(<u>지원사업</u>) ----- ----- ----- <u>권익</u> 및 ----- ----- --- <u>실시하여야 한다.</u></p>
<p>1. ~ 4. (생략)</p> <p>5. 입양 후 <u>원만한 적응</u>을 위한 상담 및 <u>사회복지서비스</u> 제공</p>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6. (생략)</p> <p>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p>	<p>1. ~ 4. (현행과 같음)</p> <p>5. ----- <u>입양아동과 입양가정의 상호적응</u>----- ----- <u>복지서비스</u> -----</p> <p>6. <u>입양아동과 입양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 및 차별 해소 정책의 수립·시행</u></p> <p>7. (현행 제6호와 같음)</p> <p>8. ----- ----- <u>사업</u></p>	<p>1. ~ 4. (현행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p> <p>(개정안과 같음)</p> <p>7. (현행 제6호와 같음) (개정안과 같음)</p>

사항

제5조(지원대상)

<신 설>

<신 설>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서울특별시 (이하 “시”라 한다)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

제5조(양육보조금 등의 지급) ① 시장은 입양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가정에 다음 각 호의 양육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양육수당
2. 의료비
3. 아동교육지원비
4. 그 밖에 필요한 양육보조금

② 시장은 입양을 축하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가정에 입양 축하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 대상-----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삭 제>

면서 요보호아동을
입양한 가정으로 한
다. 다만 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아동으로 한
정한다.

--- 주민등록-----

보호대상아동-----

--. <단서 삭제>

제6조(지원범위) 시장
은 입양가정에 대하
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
원할 수 있다.

1. 입양축하금 : 입양
아동 1명당 100만
원. 다만, 입양아동
이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200만원
2. 입양아동에 대한
교육비

제6조(환수조치) 시장
은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제5조의 양육
보조금 및 입양축하
금 등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안과 같음)

제7조(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제6조의
입양 축하금 등을 받
은 것으로 확인되면
지체 없이 환수하여
야 한다.

<삭 제>

(개정안과 같음)

<p><u>제8조(홍보)</u> 시장은 <u>입양기관과</u> 협조하여 신문, 유선방송, 시 및 입양기관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입양 장려 및 <u>입양가정 지원</u> 등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p>	<p><u>제7조(홍보)</u> ----- <u>자</u> <u>치구 등과</u> ----- ----- ----- ----- ----- <u>지원</u> ----- ----- -----.</p>	<p>(개정안과 같음)</p>
<p><u>제9조(권한의 위임)</u> 시장은 <u>입양가정 지원</u>을 위한 지원 신청 등에 관한 사무를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p>	<p><u>제8조(권한의 위임)</u> -- --- <u>제5조에 따른 지</u> <u>급</u> ----- ----- ----- -----.</p>	<p>(개정안과 같음)</p>
<p><u>제10조 (생략)</u></p>	<p><u>제9조 (현행 제10조와 같음)</u></p>	<p><u>제9조 (현행 제10조와 같음)</u></p>

서울특별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요보호아동”을 “보호대상아동”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와”를 “다음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8세 미만인 사람”을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종전의 제4호) 중 “요보호아동”을 “보호대상아동”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종전의 제5호) 중 “요보호아동”을 “보호대상아동”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가정을”을 “영구적인 가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영구적인 가정을 제공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유사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입양아동과 입양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 및 차별 해소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입양과 관련한 기관 또는 개인이 입양으로 인하여 부당한 재정적 이익 등을 취득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의 제목“(입양가정 지원사업)”을“(지원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권익과”를 “권익 및”으로, “지원할 수 있다”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원만한 적응”을 “입양아동과 입양가정의 상호적응”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복지서비스”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입양아동과 입양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 및 차별 해소 정책의 수립·시행

제5조의 제목“(지원대상)”을“(양육보조금 등의 지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시장은 입양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가정에 다음 각 호의 양육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양육수당

2. 의료비

3. 아동교육지원비

4. 그 밖에 필요한 양육보조금

② 시장은 입양을 축하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가정에 입양축하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환수조치) 시장은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제5조의 양육보조금 및 입양축하금 등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제7조를 삭제하고,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9조까지로 한다.

제7조(종전의 제8조) 중 “입양기관과”를 “자치구 등과”로, “입양가정 지원”을 “지원”으로 한다.

제8조(종전의 제9조) 중 “입양가정 지원을 위한 지원”을 “제5조에 따른 지급”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을 말한다.

4. “요보호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을 말한다.

5. “입양가정”이란 요보호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말한다.

6. “입양기관”이란 법 제20조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신 설>

<신 설>

3. “보호대상아동”이란 -----
-.

4. -----
보호대상아동----

<삭 제>

제3조(시장의 책무) ① -----

----- 영구적인 가정을 -----
----- . 이 경우 영구적인 가정을 제공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유사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입양아동과 입양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 및 차별 해소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입양과 관련한 기관 또는 개인이 입양으로 인하여 부당한 재정적 이익 등을 취득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건전한 입양문

제4조(입양가정 지원사업) 시장은
건전한 입양문화의 조성
과 입양 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 4. (생략)
5. 입양 후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신설>

6. (생략)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요보호 아동을 입양한 가정으로 한다. 다만 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아동으로 한정한다.

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
----- 권익 및

----- 실시하여야 한다.

1. ~ 4. (현행과 같음)
5. ----- 입양아동과 입양가정의 상호적응-----
-- 복지서비스 -----

6. 입양아동과 입양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 및 차별 해소 정책의 수립·시행

7. (현행 제6호와 같음)
8. -----
사업

제5조(양육보조금 등의 지급) ① 시장은 입양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가정에 다음 각 호의 양육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양육수당
2. 의료비
3. 아동교육지원비

<신 설>

제6조(지원범위) 시장은 입양가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입양축하금 :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 다만,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200만원
2. 입양아동에 대한 교육비

제7조(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제6조의 입양 축하금 등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홍보) 시장은 입양기관과 협조하여 신문, 유선방송, 시 및 입양기관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입양 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 등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입양가정 지원을 위한 지원 신청 등에 관한 사무를 자치구청장에게 위

4. 그 밖에 필요한 양육보조금

② 시장은 입양을 축하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가정에 입양축하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환수조치) 시장은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제5조의 양육보조금 및 입양축하금 등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삭 제>

제7조(홍보) ----- 자치구 등과 -----

지원 -----
-----.

제8조(권한의 위임) ----- 제5조에
따른 지급 -----

입할 수 있다.

제10조 (생략)

-----.

제9조 (현행 제10조와 같음)